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지침

소관부서 : 준법감시인

작성	검토	검토	승인

정번호	개정일	개정내용	비고
1	2022. 06. 17.		
2			
3			

주식회사 어라운드자산운용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지침

제 정 : 2022. 06.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 감독규정 등(“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 관리 등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 등을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 ①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등

제4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 ①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 한다. 다만, 지정된 자가 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정보유출 대응매뉴얼(contingency plan)의 마련
8. 관리적 보안대책 시행결과에 따른 시정·개선에 필요한 조치
9.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업무시행세칙별지 제1호 서식.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2. 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③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과정에서 임직원의 신용정보 무단조회, 오·남용 등 주요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직원으로 하여금 경위서의 제출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위반사항의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신용정보의 처리기준

제6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에 대한 동의)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국내거소신고번호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3.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7조(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제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필수적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

가.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3자 제공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의 관련성

2. 선택적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

가.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사실

나.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 시의 혜택

㉢ 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제9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 ㉠ 회사가 제6조 내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녹취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 회사가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6조 제2항 각 호, 제7조 각 호,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하, “동의시 필수 고지사항”)과 제5항의 고객권리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양식에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구분하거나 각각의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인 경우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그룹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 회사가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동의 받는 경우에는 제6장(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따른 고객의 권리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고객권리안내문을 사전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동의방식의 특성상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 ㉠ 회사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수탁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 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에 따른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주요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법 제32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영 별표 2의2.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

시하는 시기 및 방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공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

2.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보관 기간(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

2. 개인신용정보를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의 결과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정보 보안 약정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 회사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탁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기업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중 1인 이상을 지정 한자

㉢ 회사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

㉣ 회사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마련기준]에 따른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수탁자에게 교육하거나 수탁자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

㉔ 회사가 수탁자와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점검 및 교육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법 제4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탁업체 점검 체크리스트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㉕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영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선택적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삭제하여야 한다.

㉖ 회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필수적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의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2. 회사가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㉗ 제2항제2호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㉘ 회사는 필수적 개인신용정보의 접근권한 부여 및 그 이용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㉙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회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㉔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제2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㉕ 회사는 제5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㉖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된 날이라 함은 계좌의 적극적 폐쇄, 계약의 종료 등 고객과의 모든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4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하여 [감독규정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마련기준]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㉑ 회사와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를 포함)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㉒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오·남용 금지)

- ㉑ 임직원은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정보가 분실, 유출, 도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㉒ 임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 받아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불필요한 권한을 부여 받았을 경우 해당 권한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권한의 회수 요청 등의 개인신용정보

의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판매, 대여 등 제공하는 행위 및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㉔ 임직원은 마케팅, 기타 업무의 목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 범위의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한 이용이 업무상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㉕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의 이상·과다 조회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및 제재)

㉖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련부서, 영업점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㉗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신용정보의 누설 통지 등

제18조(개인신용정보 누설의 예시)

회사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볼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제19조(누설 통지 방법 등)

㉙ 회사는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㉔ 회사는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기간 동안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 : 15일

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 15일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 : 7일

㉕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제22조에 따른 누설 피해 최소화 대책 등에 따라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㉖ 제1항에 따른 통지후 미확인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누설 신고)

㉔ 회사는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9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1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감독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 누설신고서]에 따른 신용정보 누설 신고서를 통하여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누설 피해 최소화 대책)

회사는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2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①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가 7일 이내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의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의 이용이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한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3. 성과관리
 4. 위탁업무의 수행
 5.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한다.
- ⑥ 신용정보주체가 <별지 제4호 서식>을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에 대해 통지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감독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에 따라 제1항의 조회사항(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신용정보주체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에 따라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제6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⑧ 회사는 제6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정기적으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간격을 연1회 이상으로 한다.
- ⑨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 할 수 있다.
 -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대상정보와 정정 청구사유를 받아, 정정청구 사유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 대해 처리한 결과를 알려야 한다.
-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경과 등을 우선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회사는 제4항의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회사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 2. 회사로부터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 ㉥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와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3. 회사가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4.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 ㉔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제24조 제2항의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 ㉕ 회사는 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의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신용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에 따라 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이 어려워지거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㉖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㉗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 및 연락 중지에 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 ㉘ 회사는 신용정보 주체가 연락 중지에 대한 요청을 하였을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㉙ 신용정보주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을 이용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5년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3개월
- ㉚ 회사는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㉛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삭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㉔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신용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㉕ 회사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사유의 근거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㉖ 회사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삭제청구 처리 대장을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㉗ 회사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정보 활용 체제를 공시하여야 한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4.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㉘ 회사는 제1항의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신용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㉙ 회사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고객 권리 안내문

본 내용은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철회권 등 각종 권리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고객권리 안내문"입니다.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1.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2. 고객은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1.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당사 대표전화 : 02-515-5392(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00~오후 5:00)

※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

용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당사 대표전화 : 02-734-9800(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00~오후 5:00)

※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당사 대표전화 : 02-734-9800(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00~오후 5:00)

※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한국 신용 정보(주) : 02-2122-4000 / 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 www.kisinfo.com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6000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대표전화 : 02-515-5392(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00~오후 5:00)
- 금융투자협회고객만족센터 : 1588-2133
- 금융감독원금융민원 :국번없이 1332

<별지 2>

신용정보 보안 약정서

주식회사 어라운드자산운용(이하 "위탁자"라 한다)가_____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업무상 제공·활용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업무상 제공·활용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상호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목적 외 사용 금지)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는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 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고객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또는 다른 매체)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가공해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활용 통제 및 전담 관리자 지정)

1.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각각에게 전용 ID 부여 및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이용자가 고객 신용정보에 접근할 경우 ID 및 패스워드를 통해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이용자의 고객 신용정보 접근 및 활용에 대해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고객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각 이용자의 ID 및 패스워드의 공유·누설을 금지하며, "수탁자"는 각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 4 조 (신용정보의 송수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고객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수신하는 경우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 5 조 (고객정보 폐기 및 반납)

1.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대해 사용 또는 보관기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폐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보관기간에도 불구하고 동의철회권을 행사하는 고객을 대신해 "위탁자"가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3. 제 1 항과 제 2 항에 의거 "수탁자"가 고객 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위탁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위탁자"는 "수탁자"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폐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의 사무실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 (책 임)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탁자"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위탁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 7 조 (교 육)

"수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 8 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 위탁자” 와 “ 수탁자” 상호간 고객정보의 제공 또는 활용과 관련한 계약이 유효한 한 이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이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별지 3>

수탁업체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요소	No.	세부항목	결과 (Y,N,N/A)	비고
보안관리 약정 체결 여부	1	당사와 · 보안관리 약정· 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정기적 교육 실시	2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사고 예방을 포함한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교육 사이트(무료) - 인터넷진흥원(KISA) (http://www.sis.or.kr)		
보안서약서 징구	3	신용정보취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 비밀유지 및 위반에 대한 사항 명시		
목적외 이용·제공 현황	4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재위탁 여부	5	신용정보 처리를 재위탁하고 있는가?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6	신용정보책임자 지정, 신용정보취급자 역할 및 책임,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소상공인 제외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7-1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가? * 신용정보(보관)처리시스템 로그인시 비밀번호 기준 준수여부 - 복잡도 : 영대/소,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 자릿수 : 8자리 이상		
	7-2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 불법적인 접근 및 침입예방을 위하여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		소상공인 제외

점검요소	No.	세부항목	결과 (Y,N,N/A)	비고
신용정보 접근 권한의 제한	8	신용정보는 확인(조회)이 필요한 사람에 한하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 업무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계정(비밀번호), 파일 비밀번호 등을 설정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9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되어 있는가? * DB :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보관 * PC : 파일자체 비밀번호 설정기능 등 적용		
신용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10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기록항목 : ID, 일시, IP, 수행업무 등 * 보관기간 : 6개월이상 * 소규모 : 접속기록을 수기로 작성/승인해도 됨		신용정보처리시스템만 해당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11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업무용컴퓨터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 하는가? * 백신 업데이트 날짜 최신여부		
신용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12	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저장매체(USB, CD)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하는가?		
신용정보 파기	13	신용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점검일자 : 2022

점검부서 : 준법감시인

점 검 자 :

(서명/인)

<별지 5>

개인신용정보 삭제 신청서

정보주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유의사항	<p>1.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삭제로 인하여 자료열람 등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3제1항에 근거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는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인 경우 금융거래 종료 후 5년,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p> <p>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p>			
<p>상기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귀 사와의 금융거래종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p> <p>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p>				
<p>◆ 대리인 위임장</p>				
성명 :		관계 :		연락처 :
<p>본인(위임인)은 위 대리인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신청을 위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p> <p>년 월 일</p> <p>본인(위임인):(서명 또는 인)</p>				